
제8차 IOTC 할당량기준위원회 참석 결과

2021. 7.



한국원양산업협회

해외수산업협력센터

I 회의 개요

□ **회의명** : 제8차 IOTC 할당량기준위원회(TCAC08)*

* 영문명 : Technical Committee on Allocation Criteria (TCAC08)

○ 의장 : Nadia Bouffard (캐나다)

□ **회의 목적**

○ IOTC 할당량 기준 설정 논의

□ **일시/장소** : '21.6.28.(월)~7.01.(목)* / 화상회의

* 하루 4시간, 15분 휴식(한국시간 19:00~23:00)

□ **참석자**(약 100여명) : 한국, EU, 일본, 몰디브 등 IOTC 회원국, 협력적 비회원국 및 NGOs

○ 해외수산협력센터 참석자 : 원태훈 전문관

□ **주요 의제**

○ IOTC 할당 체제에 관한 의장 제안서 검토

- 쿼터 할당 자격

- 할당 구조

- 조정 및 교정 요소

- 쿼터 이전 및 이용 방식

II 주요 회의 내용

1 의장 제안서 논의

□ 제1조 - 용어(Use of Terms)

- (연안국 정의) EU는 의장이 제안서에 제시된 연안국 정의*가 IOTC 협약**에 언급하는 연안국과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

* EEZ가 IOTC 협약수역에 인접 또는 포함되는 국가

** 제4조 멤버십

- (i) 협약수역 내 전체/일부에 위치한 국가
- (ii) 협약에 포함된 어종을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의 국가
- (iii) (i)과 (ii)에 언급된 국가를 회원국으로 보유한 지역 경제통합체

※ IOTC 협약 정의(4조(iii))에 따르면 EU는 프랑스령으로 인해 연안국도 될 수 있음

- 몰디브는 UN 정의를 따라야 함을 강조하며 EU의 제안에 반대

- 이외, 개발도상 연안국(developing coastal states), 최빈국(least developed states) 등 정의 추가 요청이 있었음

□ 제3조 - 지도 원리(Guiding Principle)

- (양립성 조항) 일본은 3.4항과 3.5항* 사이에 공해와 EEZ의 권리 균형에 관한 양립성(compatability) 조항 신설을 제안

* 3.4항 : 연안국의 EEZ에 대한 주권과 의무 존중

3.5항 : IOTC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모든 국가의 권리와 의무 존중

- (어획 이전) 3.7항은 선진국 CPCs에서 개발도상 연안국 CPCs로 조업 기회의 단계별 이전을 명시

- 중국은 EU의 연안국 지위와 함께 한국, 일본 등 일부 선진국들은 어획량이 매우 적음을 지적하며 본 조항의 문제점을 제기

- 호주 등 연안국은 조업 기회 이전은 즉시 이뤄져야 함을 주장하며 단계적 이전을 반대하였고, EU와 일본은 업계 영향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

□ 제4조 - 적격성(Eligibility)

- 회원국 자격이 없는 대만(invited expert)은 제안서에 체약국과 협력적 비체약국, 신규 진입국만 언급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자신들을 위한 조항 신설을 요청
- 이에 대만의 할당 적격성을 인정하는 각주 삽입 결정

□ 제5조 - 범위(Scope)

- (어구 포함 여부) 일본은 할당 체제에 어구를 포함하면 관리가 복잡해질 것이라 주장하며 어구를 범위에서 제외하기를 제안
- (군도수역 제외) 인도네시아는 군도수역을 포함하는 모든 연안국의 영해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
- 이에 대해 영국은 영해가 관리되지 않으면 철저한 자원관리가 불가능함을 지적하며 인도네시아 주장을 반대
- 한국도 WCPFC 북방참다랑어의 예를 들며 다른 RFMOs에서도 영해가 국제기구의 관리영역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음을 설명*
- *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는 WCPFC 열대다랑어 조치가 EEZ와 공해에만 적용됨을 말하며 한국 주장에 반박

□ 제6조 - 할당 구조(Allocation Structure)

- (Proxy 이용 여부) 일본은 총허용어획량(TAC) 관련 조항에서 언급된 TAC의 대용물(proxy)은 과학적 접근을 통한 방법이 아닌 임의로 정해지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용을 반대
- EU는 어종에 따라 관리 절차가 수립되지 못해 부재할 경우 TAC를 대신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용물 이용을 지지
- (EEZ 과거 어획량 귀속) 몰디브는 EEZ 내 과거 어획량이 100% 연안국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언급하며, 이는 WCPFC, IATTC 등 다른 RFMOs에서도 이미 인정되고 있는 관행이라 주장

- 호주 등 연안국들은 이에 동의하며 UNCLOS 등 국제법에 따른 EEZ 내 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를 강조
- 우리나라는 EEZ에 대한 연안국 권리를 인정하기에 입어료를 지급하는 것이라 반박하며,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어획하였으므로 EEZ 어획량은 조업국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주장
- (신규 진입국) 연안국은 추후 신규 국가가 IOTC에 가입 시 해당 국가가 연안국일 때에만 할당이 허락되어야 한다고 주장
 - 연안국들은 현재 황다랑어 등 인도양 다랑어 자원이 악화되어 있고, 개도국 비율이 높은 인도양 연안국들이 향후 어업을 개발하였을 때 자신들이 자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
 - EU는 공해에서는 모든 국가가 동등하게 조업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함을 지적하며 연안국의 주장에 반대
 - 영국은 IOTC 협약에 가입하는 순간 정식 회원국이 되며, 현재 제안서에서는 신규 진입국과 회원국의 구분이 어려움을 지적
- (과거 어획량 설정 기간) 어획량 기반 할당량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 기간은 최대한 길수록 좋다는 의견이 다수를 형성
 - 특히 최근 몇 년은 결의19/01이 채택되며 황다랑어 어획량을 감축한 국가와 감축 노력에서 면제된 국가들 사이 불공평한 격차가 형성되어 기준 연도로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됨
- (기타 의견) 중국은 연안국에게 조업 기회를 이전할 때 특정 어종이 국가 수역에서 서식하지 않거나, 해당 어종을 어획하지 않는 국가에게 쿼터를 무조건 할당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함을 지적*
 - * 예를 들어, 협약수역 북쪽에 위치하여 EEZ에서 날개다랑어가 서식하지 않는 연안국에게 날개다랑어 쿼터 이전은 무의미함을 주장
- 이에 대해 몰디브는 국가간 필요한 어종의 쿼터를 교환하여 해결할 수 있음을 주장

□ 제7조 - 조정(Adjustments)

- (미소진 쿼터 조정) 초과 어획분(over-catch)의 익년 차감과 더불어 미소진분(under-harvest)의 익년 이월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
 - EU, 일본, 중국 등 국가는 ICCAT 등 다른 RFMOs에서 미소진분 이월이 허용되고 있고, 어종별로 이월 허용 비율이 달리 적용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본 제안을 지지
- (심각한 불이행) EU 등 일부 국가는 심각한 불이행은 이행위원회가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
 - 이에, 의장은 본 사안이 TCAC의 요청으로 이미 지난 6월 18차 이행위원회에서 논의되었지만, 구체적인 결론 없이 다시 TCAC로 되돌아왔음을 상기

□ 제8조 - 할당 이전 및 이용(Allocation Transfers and use)

- (쿼터 이전) 쿼터 이전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가 이뤄졌으나, EU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들로부터 다량의 쿼터를 체계적으로 이전받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아야 함을 주장
 - 이와 더불어, 타국으로부터 이전받은 쿼터는 재이전이 불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
- 할당된 쿼터를 보존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국가는 위원회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8.3항* 관련,
 - 영국과 중국 등 일부 국가는 자발적 성격의 할당량 이용 포기에 대해 의무를 강제하는 부조리를 지적하며 본 조항의 삭제를 주장

* 8.3. A CPC or New Entrant that does not intend to fish, transfer, or preserve its allocation for conservation purposes, in a given allocation period, shall notify the Commission in writing, within xx days of the Annual meeting of the commission.

□ 향후 계획

- 제25차 연례회의 종료 후 TCAC08 의장 제안서를 상세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던 회원국이 많음을 고려하여 7월 31일까지 회원국이 의장에게 의견 제출 결정
- 이후 차기 회의(TCAC09)* 6주 전인 9월 23일 의장 제안서 개정본 회람 예정

* '21.11.2~5. / 화상회의(잠정)

** 일정표

일자	내용
'21.7.31.(토)	회원국 의견 제출 및 수렴
'21.9.23.(목)	의장 제안서 개정안 회원국 회람
'21.11.2.(화)~5.(금)	제9차 할당량기준위원회(TCAC09)